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4-2판)」 개정 안내

1. 관련

- 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제83조
- 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25866(2021.11.25.)호
- 다.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(2022.1.24.)

2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「**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4-2판)**」를 붙임과 같이 개정·안내하여 와 전달드리오니, 지자체별로 행정명령 재발령 등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주요 개정사항
- (마스크 종류 강화) 넥워머·바라클라바는 과태료 부과 대상, 3밀시설 등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장
 - (올바른 착용법 강화) 마스크 액세서리 사용 자제
 - (관리·운영자 처분부담 경감)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

나. 시행예정일: 2022. 2. 15.(화)

붙임 1. 코로나19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4-2판)」 개정 안내 1부
2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4-2판) 1부.
끝.

교육부장관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고등외국교육기관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우슬기

행정사무관

김은미

학생건강정책
과장

전결 2022.2.14.

정희권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1268 ((2022.2.14.)) 접수 (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 / www.moe.go.kr
동)

전화 044-203-6962 전송 044-203-6438 / woosg20@korea.kr / 공개